

변경대비표(일반 및 자펀드)

1. 대상 펀드:

no.	펀드명	변경사항	모명칭	결산	변동성	법개정
1	미래에셋로저스농산물지수특별자산투자신탁(일반상품-파생형)	1)	-	-	-	-
2	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)	2), 7)	-	-	-	주 2)
3	미래에셋 MSCIACWORLD 인덱스증권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H)	2),7)	-	-	-	주 1)
4	미래에셋 OCIO-DB 표준형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	7)	○	-	-	-
5	미래에셋연금저축베스트컬렉션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7)	○	-	-	주 1)
6	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 1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7)	○	○	○	주 2)
7	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 2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7)	○	○	○	주 2)
8	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 3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7)	○	○	○	주 2)
9	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 4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7)	○	-	○	주 2)
10	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7)	○	○	○	주 2)
11	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)	7)	○	○	○	주 2)
12	미래에셋퇴직플랜농산물안정형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	7)	○	-	-	주 2)
13	미래에셋퇴직플랜원자재안정형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	7)	○	-	-	주 2)
14	미래에셋퇴직플랜 KRX100 인덱스안정형 1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7)	○	○	○	주 2)
15	미래에셋퇴직플랜 KRX100 인덱스안정형 2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7)	○	○	○	주 2)
16	미래에셋퇴직플랜 KRX100 인덱스안정형 3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7)	○	○	○	주 2)
17	미래에셋퇴직플랜 KRX100 인덱스안정형 4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7)	○	-	○	주 2)
18	미래에셋퇴직플랜 KRX100 인덱스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7)	○	○	○	주 2)

2. 변경 사항:

- 1) 클래스 명칭 변경
- 2) 클래스 가입자격 추가
- 3) 모투자신탁 명칭 변경
- 4)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- 5) 변동성 값 업데이트
- 6) 자본시장법 법 개정사항 반영
- 7) 대표이사 변경

3. 효력발생예정일: 2021년 12월 16일 (목)

4. 변경 내용:

- 1) 클래스 명칭 변경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클래스 명칭>	종류 B [수수료선취 -오프라인] 종류 B-e [수수료선취-온라인]	종류 A [수수료선취 -오프라인] 종류 A-e [수수료선취-온라인]

2) 클래스 가입자격 추가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가입자격>	종류 F <생략> <신설>	종류 F <생략> - 투자일임업자가 운영하는 일임계좌를 통해 수익증권을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

3) 모투자신탁 명칭 변경

- 미래에셋OCIO-DB표준형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
- 미래에셋연금저축베스트컬렉션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퇴직연금슬로몬1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퇴직연금슬로몬2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퇴직연금슬로몬3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퇴직연금슬로몬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퇴직연금슬로몬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
- 미래에셋퇴직연금슬로몬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
- 미래에셋퇴직플랜농산물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
- 미래에셋퇴직플랜원자재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<모투자신탁 명칭>	미래에셋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(채권)	미래에셋퇴직연금 장기 증권모투자신탁(채권)

-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1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2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3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
- 미래에셋퇴직연금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<모투자신탁 명칭>	미래에셋퇴직 연금플랜 증권모투자신탁(채권)	미래에셋퇴직 연금국공채 증권모투자신탁(채권)

5) 변동성 값 업데이트

펀드명	변경 전	변경 후	변경	변경
	등급	등급	전(%)	후(%)

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 1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5	5	2.53	2.74
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 2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5	5	4.28	4.5
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 3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	4	6.25	6.49
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	4	8.31	8.61
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3	3	12.43	12.75
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)	5	5	1.27	1.4
미래에셋퇴직플랜 KRX100 인덱스안정형 1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5	5	2.49	2.74
미래에셋퇴직플랜 KRX100 인덱스안정형 2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5	5	4.34	4.62
미래에셋퇴직플랜 KRX100 인덱스안정형 3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	4	6.37	6.74
미래에셋퇴직플랜 KRX100 인덱스안정형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	4	8.5	8.92
미래에셋퇴직플랜 KRX100 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3	3	12.74	13.31

6) 자본시장법 법 개정사항 반영

주1)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5조(자산운용지시 등)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 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주2)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5조(자산운용지시 등)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 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44조 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 ②~③<생략> ④<신설>	①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②~③<생략>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

		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-	--	---------------------

7) 대표이사 변경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대표이사>	<u>김미설</u>	<u>이병성</u>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